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4. 2. 7.(수) 10: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홍일 위 원 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지금부터 2024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3차, 제4차, 제5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4-06-007)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유진이엔티(주)에 대하여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와 같이 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유진이엔티(주)의 (주)와이티엔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제출 자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입니다. 유진이엔티(주)는 2023년 11월 10일 (주)YTN의 지분 30.95%를 한전케이디엔(주)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5일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다액출자자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주)YTN 지분 매각계획을 2022년 11월 11일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유진이엔티(주)를 낙찰자로 2023년 10월 23일 선정하고, 최종 이사회 의결 후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분 취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이엔티(주)는 (주)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방통위원회에 작년 11월 15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주)에 (주)YTN 투자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올해 1월 15일 유진이엔티(주)는 방통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보완 요청을 거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주)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한 자문을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문은 보도전문채널 최대액출자자변경승인 심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8인이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진이엔티(주)는 방통위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 상임위원과 자문위원 간담회를 2024년 2월 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진이엔티(주)는 방통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및 자문의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가능성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승인이 적절하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어 관련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진이엔티(주)의 특수관계자인 유진그룹이 건설, 물류, 금융 등 다방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YTN의 대주주가 된다면 현재에 비해 언론사로서의 이해상충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주)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진이엔티(주)에 의한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엄중한 이행이 필요하고, 아래에 있는 <표>에 심사위원회 조건(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제출 자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엔티(주)는 추가 제출 자료를 통해 저널리즘 연구소 설립과 데이터 저널리즘 지원팀 운영, 팩트체크 포럼 등을 지원하고, 보도준칙 강화 및 공익성보고서 발간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보도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청인과 특수관계자에 유리한 보도 등을 통해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전략 수립을 저해하는 기존 사장선임제도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는 방송 전문가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문의견입니다. 대주주나 그 계열회사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도 준칙 등에 최대액출자자와 특수관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제한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 심사위에서는 (주)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여, 향후 (주)YTN 구성원과의 협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조건(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이엔티(주)는 추가제출 자료를 통해 지급 보증 및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할 계획이 없으며, (주)YTN에서 받은 배당금은 (주)YTN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주)YTN에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모기업(유진기업, 동양)이 3년 내 600억원을 추가출자하고 (주)YTN에 대한 직접 유상증자를 3년 내 200억원을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신청인 포함 유진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채무보증, 지급보증,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가 필요하며, (주)YTN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주)YTN에서 받은 배당금은 (주)YTN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며, (주)YTN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부유보금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배당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수익 개선 계획, 자산 활용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와 콘텐츠 투자를 과도하게 절감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정적 능력 및 사회적 신용 관련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변경승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자금조달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신용 관련 각 사안을 검토한 바, 이 건의 신청을 불승인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진이엔티(주)의 자본금 확충 계획이 미비하고,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 회사 경영 투명성 확보가 어려우며, 따라서 안정적인 재무적 운영을 위한 자본금 확충 계획 제출 및 독립적인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진이엔티(주)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YTN의 안정적 운영 및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주)YTN이 마련한 고용안정협약, 공정방송협약, 고용안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유진이엔티(주)가 존중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 확약을 받고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대해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가제출 자료를 통해 유진이엔티(주)가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편의성, 그룹 지원 역량 결집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유진이엔티(주)는 방송·미디어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술공급, 투자 등 방송·미디어 수익사업 기반으로 현금성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방송·미디어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방송·미디어 전문 싱크탱크, 미래미디어발전자문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룹 내 준법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ESG경영 실천, 사회공헌 활동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사회적 신용도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중간지주회사로서 (주)YTN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사회적 신용 관련 사항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수목적 법인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법인 형태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할지가 관건이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관련 확약, 조건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청인의 사업운영 자금을 대주주의 출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투자 내지 출자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가 필요하며, 유진이엔티(주)의 재무상황 개선 계획이 낙관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설립초기 수익이 (주)YTN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YTN의 수익이 유진이엔티(주)로 과도하게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방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변경승인 심사위 의견에서는 유진이엔티(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라면 기존 시청자 권익보호사업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엔티(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

며, 다만 동 건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항인 만큼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승인 조건안과 유진이엔티(주)가 추가 제출한 자료와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 내용, 그리고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최대액출자자로서 갖는 권한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변경승인 이후에도 신청인의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보고하고,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저한 조건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시한 변경 승인 조건안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엔티(주)가 확인 요청한 (주)와이티엔디엠비와 (주)와이티엔라디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관련 검토 결과, 유진이엔티(주)가 YTN의 최대액출자자가 되더라도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주)연합뉴스티브이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처분 사전통지를 작년 11월 29일 실시하였으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건은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시면 2월 중으로 (주)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별지로 (주)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과 유진이엔티(주) 이행각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홍일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인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대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책임 등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 등을 추가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신용 등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오늘 변경승인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둘째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셋째 시청자의 권익 보호, 네 번째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보도PP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먼저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저널리즘 연구소 설립, 데이터 저널리즘 지원팀 운영, 보도준칙 강화 및 공익성보고서 발간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가를 선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관련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 및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배당을 최소화하고 내부 유보금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YTN 투자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고, 모기업의 추가 출자, YTN에 대한 직접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재정적 능력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유진이엔티를 유진그룹의 방송·미디어 중간지주회사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진기업 동양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인수 대금 및 법인 운영 자금 확보 계획과 YTN에 대한 출자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에 대하여 청렴·윤리·준법 경영을 위한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 ESG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담 실무자를 양성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계획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을 공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이후에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승인 안건은 심사위원회의 승인 조건(안), 신청인의 추가자료 제출과 이행각서의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신청을 승인하되, 신청인의 최다액출자자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보도전문채널에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된 부과조건, 즉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방송전문경영인 선임,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그리고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과 청렴·윤리·준법 경영계획 및 사회공헌 확대 방안 이행 등의 조건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처에서는 변경승인 이후에 신청인으로부터 부과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받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대한 조건이행을 제대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방송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이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평 및 여론 형성 등을 수행하는 것이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신청인은 변경승인 관련 이행각서, 그리고 변경승인 조건들을 잘 준수하여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채널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안전 심의과정에서 짚어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보도전문채널은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인에 대해 방송에 대한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건전성, YTN에 대한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해서도 심사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또 다시 자문을 요청하여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나아가 YTN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로부터 추가로 자문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과 자문의견, 신청인이 의견청취 시 약속한 내용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 안전은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두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유진이엔티(주)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되,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전문가 자문의견, 이행각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의견청취 시 약속한 내용과 사업계획에 제시한 내용 중 의미 있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전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유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2> 경과사항입니다. '22년 10월 15일에 카카오·네이버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22년 12월 6일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및 시정요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 대비훈련 조치, 이용자 고지 및 피해구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3년 10월 5일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장애 관련 이용자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대상 및 수단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라는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 외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약관 개선, 집단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입니다. <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유료 서비스' 중단 시에만 중단사실 등을 고지토록 하던 것을 '무료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지토록 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고지토록 하던 것을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토록 고지 기준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SNS 등을 고지수단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 외에 인터넷으로도 대량문자 발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하여 주시면 2월에서 3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개정령(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0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12월 정부 합동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및 시정요구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4년 10월에는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장애 관련 이용자보호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유료 서비스 중단에만 중단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무료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지하도록 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고지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고지로 고지 기준을 단축하며, 또한 이용자가 고지 발신 수단에 SNS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 사무처에서는 입법예고 및 관련 부처 협의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 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 8.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3분 폐회 】